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1-52
----------	---------

제출연월일 : 2021년 6월 일

제 출 자 : 강 서 구 청 장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안 제4조)

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5조)

마.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대체함 (안 제6조 ~ 제11조)

바. 구청장은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사.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안 제13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성폭력방지기본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시행)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2021. 4. 16. ~ 5. 6.): 의견 없음

2) 규제사전심사: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여성  
폭력방지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  
해자”라 한다)의 보호·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위기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3.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5. 그 밖에 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여성폭력 예방교육)** 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관련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 4. 작성자 : 생활복지국 가족정책과장 송삼선

(담당 : 행정8급 최영주 / ☎ 2600-6769)



#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개정이유

-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
- 나.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과 관련한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3조 ~ 제4조)
- 다.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아동·여성 안전 지역연대”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대체함(안 제6조 ~ 제11조)
- 바. 여성폭력 방지를 위한 교육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2조 ~ 13조)

##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상위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제명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정비하고 정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21 - 19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이경민
입안주무부서	가족정책과	통보(조치)일		2021. 5. 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1A서울강서021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최영주	전화번호 02-2600-6769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1년 4월 20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가족정책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 취지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1년 04월 27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가족정책과장 귀하

**「여성폭력방지법」**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2019. 12. 25. 시행)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